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2시 15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변상금·과태료 부과	3

변상금·과태료 부과

2014.04.17 조회수 102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9
담당부서	도로과
상위법령	도로법 제38조
조례	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징수방법을 준용한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0 >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